

---

# 제31회 여주도자기축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용역 과업설명서

---



# 제31회 여주도자기축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용역 과업설명서

## 1 축제 개요

- 행사명 : 제31회 여주도자기 축제
- 주제 : 혼을 담은 천년 여주도자
- 기간 : 2019. 4. 27.(토) ~ 5. 12.(일) [16일간]  
※ 운영시간 : 10:00 ~ 19:00
- 장소 : 신륵사관광지 일원
- 내용 : 도자기 전시·판매, 체험, 공연·이벤트 행사 등

## 2 과업 개요

- 과업명 : 제31회 여주도자기축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행 용역
- 과업목적 : 도자기 축제 주제에 부합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행
- 용역비 : 금91,240,000원(부가가치세 등 일체 포함)
- 사업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. 6. 1.까지
- 장소 : 신륵사 관광지 일원
- 계약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
- 과업범위
  - 공간적 범위 : 제31회 여주도자기축제장 일원
  - 시간적 범위 : 착수일로부터 2019. 6. 1.까지
  - 내용적 범위 :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, 기타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

### 3 과업내용

#### □ 일반사항

-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
  - 체험 프로그램 기획(안), 운영 계획 등 제시
- 체험 프로그램 공간 조성(테이블, 의자, 재료 등)
- 그 밖에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

#### □ 세부 과업내용

- 행사장 배치도

※ 행사장 배치계획에 따라 변동가능



○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

- 체험프로그램 종류

구분	종류	세부내용	필수
1	도자접시깨기	- 액운퇴치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도자접시깨기 -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도자상품권 제공	○
2	물레체험	- 물레를 이용하여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	○
3	나만의 도자기만들기	- 직접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체험	
4	머그컵 낚시	- 낚시도구를 사용하여 머그컵을 낚시하여 가져가는 체험	
5	포토컵 및 풍경만들기	- 도자기 풍경(종) 및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넣은 포토컵을 만드는 체험	
6	도자흙밟기체험	- 넓게 펼쳐진 공원에서 도자흙과 함께 놀기	○
7	도공제	- 선인 도공께 제를 지내는 의식	○
8	불지피기행사	- 전통가마에 요출한 도자기를 꺼내는 행사	○

※ 제안사에서 제안 가능하며 협의에 의해 필수 프로그램 외 종류 변경 가능(단 용역비는 변동없음)

- 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프로그램 종류 별 운영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함
- 프로그램 종류 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- 체험 프로그램은 축제 기간 4.27. ~ 5.12. 16일간 상시 진행하여야 하며 진행요원이 상시 상주하여야 함
- 물레체험,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등 도자 관련 프로그램은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력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함
- 재난·우천·침수·강풍 등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대비한 대처방안을 수립하여야 함
- 과업설명서상의 제안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세부 집행계획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

- 체험 프로그램 공간 조성(테이블, 의자, 재료 등)
  - 각 체험 프로그램에 맞는 공간 조성(테이블, 의자, 재료 등) 일체를 준비하여야 하며, 특히 재료의 경우 모자람이 없도록 준비하여 재료소진의 이유로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
  - 행사 및 장소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안 제시
  - 체험 프로그램 진행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
  - 기타사항
    - 행사 종료 후 시설물 철거 및 행사장 원상복구
    -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
    -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
    - 프로그램 체험료 등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반환을 원칙으로 함. 다만 체험 프로그램에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 현황과 비용현황 및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, 잔액과 지출 금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은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함

## 4 과업수행 지침

---

-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
  - 계약 후 5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과업예정공정표, 과업참여자명단, 보안각서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착수계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  - 최종보고는 행사 종료 후 2019. 6. 1.까지 제출하며 행사관련 사진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-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
  -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제출서류는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
-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,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- 필요 시 제안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
○ 단체 선정에 따른 계약 일반사항

-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, 제31회 여주도자기축제 체험 프로그램 대행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(타 행사 겸직 금지)
-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책임 및 행정적,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
-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금91,240,000원(금구천일백이십사만원) 이내로 하고 부가세, 대행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

○ 사업의 시행

-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처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
-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,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
- 날씨,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용역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
- 계약상대자는 용역 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철저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

○ 발주처 지도·감독

- 발주처는 본 용역과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함
-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본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제출한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
- 발주처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

○ 손해배상

-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.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의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
-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서 제 3자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처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

○ 계약의 해지 등

- 발주처는 다음 사항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한 발주처의 손해(신뢰실추, 손해배상 등)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함
  -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
  -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,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

-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
- 과업설명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- 우선 협상 순위자가 계약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시작함

○ 사업비정산 등 회계처리

-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처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

○ 기타사항

- 본 과업은 제안서 내용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의·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함
-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설치한 ‘여주도자기축제 자문위원회’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, 본 용역 시행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함
-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특허권, 저작권, 지적재산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
- 발주처는 과업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사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범위에 벗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음
- 본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시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함
-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